#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5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이훈기·김태선·김 현

황정아 • 민병덕 • 서영교

김정호 · 김영배 · 박용갑

박민규 • 한준호 • 문금주

이정문 • 강유정 • 위성곤

김용만 · 최민희 · 위성락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 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에 화재위험에 대비하거나 화재 발생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6항"을 "제11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제11조의2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의2제11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충전시설을 신고하여야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전용주차구역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 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 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전용주차구역-----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 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 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

### <신 설>

- 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 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 ⑨ (생 략)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① (생략)
- ①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 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
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u>한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u>⑥</u> 제5항
⑦ ∼ ⑪ (현행 제5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u>12</u>
<u>제</u> 9항 및
<u>제10항</u>
 <u>③</u> (현행 제11항과 같음)
 <u>③</u> (현행 제11항과 같음) <u>④</u> <u>제13항</u>
<del></del>
<del></del>

한다.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 저 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u>제11조</u> 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9</u> 지 한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u>를 한</u>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신 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③ (생 략)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u>제11</u> 조의2제8항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2제11항을 위반하여
<u>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u> ② <u>제11조의2제9항 및 제10항</u> -
  ③ (현행과 같음)